

의안번호	2210404
의 퇴 인	최민희의원
회 답 일	2025.8.1.
추계번호	25D27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확대(현행 85명 → 1,300명)하는 경우, 보수·기관부담금·기본경비·사업비·자산취득비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수사관 50% 파견, 총 5,286억 500만원(연평균 1,057억 2,100만원)
- (시나리오2) 수사관 25% 파견, 총 5,757억 700만원(연평균 1,151억 4,100만원)
- (시나리오3) 수사관 파견 없음, 총 6,237억 900만원(연평균 1,247억 4,2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수사관 파견 50% 가정)	49,669	99,050	124,652	126,068	129,166	528,605	105,721
시나리오2 (수사관 파견 25% 가정)	53,817	107,550	135,856	137,550	140,934	575,707	115,141
시나리오3 (수사관 파견 없음 가정)	58,099	116,326	147,219	149,196	152,869	623,709	124,742

주: 본 추계는 국가수사본부의 인력 구성, 수사처의 직급별 연봉액, 감사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수사처 정원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수사관 파견 규모, 수사처의 인적 구성 등의 변수가 달라지면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제2항(수사처 검사)	수사처 검사의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함	—
2	안 제11조의2(수사처 직원의 정원)	수사처 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의 총 정원을 현행 '60명'에서 '1000명 이내'로 확대함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 제2항(수사처검사)	○	-
2	안 제11조의2(수사처 직원의 정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수사처의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정원(최대)과 유사 수사조직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인력 구성비를 참고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여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해서 추계함
- 안 제8조제2항¹⁾은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최대 275명(25명 → 300명 이내) 증원하고, 안 제11조의2²⁾는 수사처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을 최대 940명(60명 → 1,000명 이내) 증원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수사처검사와 수사처 직원(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규모는 최대 1,215명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 개정안에 따른 수사처 인력증원 규모(최대)

구분		현행(A)	개정안(B)	증원규모(C=B-A)
검사		25명	300명	275명
직원	수사관	40명	1,000명	940명
	그 밖의 직원	20명		
소계		85명	1,300명	1,215명

주: 인력증원 규모는 개정안에 따른 최대 정원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안 제8조(수사처검사)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로 한다.
 2) 안 제11조의2(수사처 직원의 정원)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제11조에 따른 수사처 직원의 총 정원은 1,0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 본 추계에서 수사처검사 증원인력(275명)은 전원 신규채용하고, 수사처 직원(수사관, 그 밖의 직원) 증원인력(940명)은 직무의 유사성을 가지는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직무·직급별 인원을 산출한 후 신규채용 또는 파견을 통해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다만, 파견인력의 보수와 기관부담금은 원소속기관인 검찰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함
- 현행법은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러한 경우도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정원의 1/2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³⁾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 수사처검사 증원인력은 전원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함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별표 4의2]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인력과 수사지원인력의 정원, 직무·직급별 구성 비율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 부서별·직무별·직급별 인원: 2025.6. 기준

(단위: 명)

구분		본부장실	수사조정관	인권담당관	수사국	형사국	안보수사국	소계(비율)
경찰 공무원 (66.4%)	치안정감(1급)	1						1(0.19%)
	치안감(2급)		1		1	1	1	4(0.76%)
	경무관(3급)				1	1	1	3(0.57%)
	총경(4급)		3		7	5	4	19(3.63%)
	경정(5급)		7	1	18	14	13	53(10.11%)
	경감(6급)	1	17	3	39	29	20	109(20.80%)
	경위(6급)	1	6	3	64	20	106	200(38.17%)
	경사(7급)		6	1	38	7	64	116(22.14%)
	경장(8급)		3		8	1	5	17(3.24%)
	순경(9급)				2			2(0.38%)
	소계	3	43	8	178	78	214	524(100%)
일반직 공무원 (33.6%)	4급			1				1(0.38%)
	5급		1			1		2(0.75%)
	6급				5	12		17(6.42%)
	7급		4		9	21	1	35(13.21%)
	8급		11		18	71	6	106(40.00%)
	9급	1	1		8	55	3	68(25.66%)
	연구관				3			3(1.13%)

3)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연구사				7	3	1	11(4.15%)
	전문경력관(나)					3		3(1.13%)
	전문경력관(다)					19		19(7.17%)
	소계	1	17	1	50	185	11	265(100%)
	합계	4	60	9	228	263	225	789

주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별표 4의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본부장실은 국가수사본부장실, 수사조정관은 수사기획조정관, 인권담당관은 수사인권담당관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가수사본부의 인력구성 비율과 직무·직급별 분포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수사처 증원인력을 직무·직급별로 배분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수사처 직원 증원인력(940명) 직무·직급별 배분(안)

(단위: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수사관 (66.4%)	1 (0.1%)	5 (0.8%)	4 (0.6%)	23 (3.7%)	63 (10.1%)	368 (58.9%)	138 (22.1%)	20 (3.2%)	2 (0.3%)	624 (100%)
그 밖의 직원 (33.6%)	— (0.0%)	— (0.0%)	— (0.0%)	1 (2.5%)	6 (7.3%)	33 (42.7%)	46 (19.6%)	126 (15.5%)	104 (11.3%)	316 (100%)
합계	1	5	4	24	69	401	184	146	106	940

주: 국가수사본부 연구관, 연구사, 전문경력관은 그 밖의 직원 5급, 6급, 7급, 9급에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안 제11조의2 단서4)에서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관(4급~7급)의 일정 비율(수사인력의 50%, 25%, 0%)을 파견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수사처 직원 증원인력(940명)의 신규 채용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4) 안 제11조의2(수사처 직원의 정원) <본문 생략>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표 5] 개정안에 따른 수사처 직원 직무·직급별 신규채용 인원(안)

(단위: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수사관 (A)	시나리오1 (파견 50%)	1	5	4	12 (11)	32 (31)	184 (184)	69 (69)	20	2	329 (295)
	시나리오2 (파견 25%)	1	5	4	17 (6)	47 (16)	276 (92)	104 (34)	20	2	476 (148)
	시나리오3 (파견 없음)	1	5	4	23 (-)	63 (-)	368 (-)	138 (-)	20	2	624 (-)
그 밖의 직원(B)		-	-	-	1	6	33	46	126	104	316
신규채용 인원 (C=A+B)	시나리오1 (파견 50%)	1	5	4	13	38	217	115	146	106	645
	시나리오2 (파견 25%)	1	5	4	18	53	309	150	146	106	792
	시나리오3 (파견 없음)	1	5	4	24	69	401	184	146	106	940

주: 괄호는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 인원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수사처의 인력증원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채용 인력(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을 순차적(1년차 40%, 2년차 40%, 3년차 20%)으로 충원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수사처의 연도별 신규채용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6] 개정안에 따른 수사처 연도별 신규채용 인원(안)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합계
시나리오1 (수사관 파견 50%)	검사		110	110	55	275
	수사처 직원	수사관	134	133	62	329
		그 밖의 직원	129	124	63	316
		소계	263	257	125	645
	합계		373	267	180	920
시나리오2 (수사관 파견 25%)	검사		110	110	55	275
	수사처 직원	수사관	191	190	95	476
		그 밖의 직원	129	124	63	316
		소계	320	314	158	792
	합계		430	424	213	1,067
시나리오3 (수사관 파견 없음)	검사		110	110	55	275
	수사처 직원	수사관	250	249	125	624
		그 밖의 직원	129	124	63	316
		소계	379	373	188	940
	합계		489	483	243	1,2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 수사처 인력증원에 따른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직무(수사, 감사)와 인력규모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함
 - 감사원의 2025년 1월 기준 정원은 1,128명,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13.7%,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은 30.8%임

[표 7] 감사원 소관 인건비·기본경비·사업비 현황: 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대비 비중	주요내역	합계
인건비	—	(인건비) 97,994	141,656
기본경비	13.74%	(기본경비) 13,464	
사업비	30.82%	(감사활동경비 등) 30,198	

자료: 감사원 소관 2025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보수와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임금 평균상승률, 신규채용 직원의 기관부담금 요율 및 자산취득비 단가⁵⁾를 적용해 추정하며, 사무공간은 국가기관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수

- 개정안에 따른 보수는 신규채용 수사처 직원(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 인원수에 직급별 1인당 평균 연봉액을 곱하여 산출

5)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 (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기준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급별 1인당 연봉액은 다음 표와 같음

[표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직급별 연봉액: 2025년

(단위:천원)

구분	직급	연봉액(수당 포함)
정무직(차관급)		159,203
검사		112,892
수사인력	1급	160,305
	2급	146,845
	3급	135,180
	4급	109,815
	5급	71,489
	6급	59,888
	7급	53,252
	8급	47,114
	9급	35,931
수사지원인력	고위공무원단	146,859
	3급	115,596
	4급	109,815
	5급	85,696
	6급	58,136
	7급	50,584
	8급	40,700
	9급	38,376

주 1) 연봉액은 연봉(연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것임

2) 8급·9급의 연봉액은 수사처 자료 부재로 감사원(수사인력)과 경찰청(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적용함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수사처 직원(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인건비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9]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나리오1 (수사관 파견 50%)	보수	검사	13,021	26,668	34,135	34,954	35,793	144,571
		수사관	8953	18164	22813	23361	23922	97,213
		그 밖의 직원	6,052	12,045	15,381	15,750	16,128	65,356
		소계	28,026	56,877	72,329	74,065	75,843	307,140
	기관부담금		3,680	7,504	9,610	9,910	10,220	40,924
	합계		31,706	64,381	81,939	83,975	86,063	348,064

시나리오2 (수사관 파견 25%)	보수	검사	13,021	26,668	34,135	34,954	35,793	144,571
		수사관	12,620	25,673	32,703	33,488	34,292	138,776
		그 밖의 직원	6,052	12,045	15,381	15,750	16,128	65,356
		소계	31,693	64,386	82,219	84,192	86,213	348,703
	기관부담금		4,161	8,495	10,924	11,265	11,618	46,463
	합계		35,854	72,881	93,143	95,457	97,831	395,166
시나리오3 (수사관 파견 없음)	보수	검사	13,021	26,668	34,135	34,954	35,793	144,571
		수사관	16,405	33,426	42,734	43,760	44,810	181,135
		그 밖의 직원	6,052	12,045	15,381	15,750	16,128	65,356
		소계	35,478	72,139	92,250	94,464	96,731	391,062
	기관부담금		4,658	9,518	12,256	12,639	13,035	52,106
	합계		40,136	81,657	104,506	107,103	109,766	443,168

다. 기본경비

□ 개정안에 따른 기본경비는 보수에 2025년 감사원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13.74%)을 곱하여 추계함

- 기본경비는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추계에서 수사관의 수사처 증원인력(1,2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본경비를 산출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수사처 직원(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기본경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10]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본 경비	보수	35,478	72,139	92,250	94,464	96,731	—
	기본경비 비중	13.74%	13.74%	13.74%	13.74%	13.74%	—
	소계	4,875	9,912	12,675	12,979	13,291	53,732

주: 전체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의 비중(13.74%)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전체 인력의 보수를 포함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사업비

□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는 보수에 2025년 감사원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30.82%)을 곱하여 추계함

○ 사업비는 조직의 수사활동, 청사관리, 정보화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추계에서 수사처 증원인력(1,2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수사처 직원(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사업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11]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사업비	보수	35,478	72,139	92,250	94,464	96,731	—
	사업비 비중	30.82%	30.82%	30.82%	30.82%	30.82%	—
	소계	10,934	22,233	28,431	29,114	29,812	120,524

주: 전체 보수액 대비 사업비의 비중(30.82%)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전체 인력의 보수를 포함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자산취득비

□ 개정안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연도별로 증원되는 수사처 인력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책상, 전화기, 컴퓨터, 파티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기기를 취득하는 예산이므로, 수사관의 수사처 증원인력(1,215명) 전원을 대상으로 집행한다고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수사처 직원(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자산취득비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

[표 12] 수사처 정원 확대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자산취득비	증원 인원	424	487	304	—	—	1,215
	단가(천원)	5,080	5,182	5,285	5,391	5,499	
	소계	2,154	2,524	1,607	—	—	6,2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확대(현행 85명 → 1,300명)하는 경우, 보수·기관부담금·기본경비·사업비·자산취득비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수사관 50% 파견, 총 5,286억 500만원(연평균 1,057억 2,100만원)
- (시나리오2) 수사관 25% 파견, 총 5,757억 700만원(연평균 1,151억 4,100만원)
- (시나리오3) 수사관 파견 없음, 총 6,237억 900만원(연평균 1,247억 4,200만원)

[표 1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수사관 파견 50%)	보수	28,026	56,877	72,329	74,065	75,843	307,140	61,428
	기관부담금	3,680	7,504	9,610	9,910	10,220	40,924	8,185
	기본경비	4,875	9,912	12,675	12,979	13,291	53,732	10,746
	사업비	10,934	22,233	28,431	29,114	29,812	120,524	24,105
	자산취득비	2,154	2,524	1,607	—	—	6,285	1,257
	합계	49,669	99,050	124,652	126,068	129,166	528,605	105,721
시나리오2 (수사관 파견 25%)	보수	31,693	64,386	82,219	84,192	86,213	348,703	69,741
	기관부담금	4,161	8,495	10,924	11,265	11,618	46,463	9,293
	기본경비	4,875	9,912	12,675	12,979	13,291	53,732	10,746
	사업비	10,934	22,233	28,431	29,114	29,812	120,524	24,105
	자산취득비	2,154	2,524	1,607	—	—	6,285	1,257
	합계	53,817	107,550	135,856	137,550	140,934	575,707	115,141
시나리오3 (수사관 파견 없음)	보수	35,478	72,139	92,250	94,464	96,731	391,062	78,212
	기관부담금	4,658	9,518	12,256	12,639	13,035	52,106	10,421
	기본경비	4,875	9,912	12,675	12,979	13,291	53,732	10,746
	사업비	10,934	22,233	28,431	29,114	29,812	120,524	24,105
	자산취득비	2,154	2,524	1,607	—	—	6,285	1,257
	합계	58,099	116,326	147,219	149,196	152,869	623,709	124,742

주: 본 추계는 국가수사본부의 인력 구성, 수사처의 직급별 연봉액, 감사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수사처 정원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수사관 파견 규모, 수사처의 인적 구성 등이 변수가 달라지면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의 인력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급별 연봉액, 감사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수사처 정원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수사관 파견 규모, 수사처의 인적 구성, 기본경비 및 사업비 비중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